

## 最低賃金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05. 5. .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 대안의 제안경위

- 가. 제253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5. 4. 25)에서 2005년 2월 2일 조정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2월 2일 단병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을 병합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위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나. 제253회국회(임시회) 제6차 환경노동위원회(2005. 4. 26)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

1986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변화된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여건을 반영하여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적용시기를 개선하고 최저임금 적용 예외의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최저임금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종전의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및 노동생산성에 더하여 최저임금의 경제사회적 영향을 반영하는 소득분배율 등을 결정기준으로 추가함(안 제4조제1항).
- 나. 대상이 유사한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한 감액적용 및 양성훈련생과 수습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인가규정을 폐지하고, 수습근로자에 대한 감액적용제도로 통합하며, 그간 적용제외 인가대상이었던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도 최저임금액을 감액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및 제7조).
- 다. 도급계약에 있어서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지급되지 못한 경우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을 명시함(안 제6조제6항 및 제7항).
- 라. 최저임금 적용주기와 법정근로시간 단축 및 회계연도 시기의 불일치로 인하여 취약근로자가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당해 연도 9월 1일부터 다음연도 8월 31일까지로 되어있던 최저임금 적용기간을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함(안 제10조).
- 마. 최저임금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형량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함(안 제28조).

- 바.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한 감액적용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안 부칙 제1항).
- 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어 2005년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적용함(안 부칙 제2항).
- 아. 근로기준법개정(법률 제6974호)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임금보전을 명시함(안 부칙 제3항).

## 最低賃金法 일부개정법률안

最低賃金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4條第1項 중 “類似勤勞者の賃金 및 勞動生産性を 고려하여 事業의 種類別로 구분하여 정한다”를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로 한다.

第5條第2項 중 “就業期間이 6月을 경과하지 아니한 18歲미만의 勤勞者”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
2.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第6條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2 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당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직상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인건비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직상수급인이 하도급 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인하한 행위

第7條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第10條第2項 본문 중 “당해연도 9월 1일부터”를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로 한다.

第28條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3항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최저임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어 2005년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최저임금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최저임금 보전) 사용자는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제49조 제1항의 개정규정으로 인하여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금을 단축전 소정근로시간에 단축 당시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보다 저하하게 할 수 없다. 다만, 1주 4시간을 초과하여 단축되는 경우 그 초과되는 시간을 단축전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第4條(最低賃金の 決定基準과 區分) ①最低賃金は 勤勞者の 生計費, 類似勤勞者の 賃金 및 勞働生産性を 고려하여 事業의 種類別로 구분하여 정한다.</p> <p>②(생 략)</p> <p>第5條(最低賃金額) ①(생 략)</p> <p>②就業期間이 6月을 경과하지 아니한 18歲미만의 勤勞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最低賃金額과 다른 금액으로 最低賃金額을 정할 수 있다.</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第4條(最低賃金の 決定基準과 區分) ①----- ---<u>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u></p> <p>②(현행과 같음)</p> <p>第5條(最低賃金額) ①(현행과 같음)</p> <p>②<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u>----- ----- ----- ----- -----.</p> <p>1. <u>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u></p> <p>2.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의 <u>규정에 의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u></p>



<p>의하여 勞動部長官의 認可를 받은 者에 대하여는 第6條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p> <p>1. (생략)</p> <p>2. 修習使用中에 있는 者</p> <p>3. 勤勞者職業訓練促進法에 의하여 事業主가 실시하는 養成訓練을 받는 者</p> <p>4. (생략)</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lt;삭제&gt;</p> <p>&lt;삭제&gt;</p> <p>4. (현행과 같음)</p>
<p>第10條(最低賃金の 告示와 效力發生) ①(생략)</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最低賃金は 當해年度 9月 1日부터 效力을 발생한다. 다만, 勞動部長官은 事業의 種類別로 賃金交渉時期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效力發生時期를 따로 정할 수 있다.</p>	<p>第10條(最低賃金の 告示와 效力發生) ①(현행과 같음)</p> <p>②-----</p> <p>-----다음 연도 1월 1일부터-----</p> <p>-----</p> <p>-----</p> <p>-----</p> <p>-----.</p>
<p>第28條(벌칙)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規定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p>	<p>第28條(벌칙) -----</p> <p>-----</p> <p>----- 2천만원 -----</p> <p>-----</p> <p>-----.</p>